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12. 10. 9. (제 197 회)	

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령군수(재무과)
제출연월일	2012. . .

1. 의결주문

“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「비료관리법」이 일부개정(법률 제8591호, 2007. 8. 3 공포)됨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 등의 수수료를 요율표에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 수수료 조항을 새로이 추가
 - 비료생산업 등록 : 1건 20,000원
 - 비료수입업 신고 : 1건 20,000원

4. 개정안 : 붙임

5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6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발취 : 「비료관리법」 제11조제5항, 제12조제3항
- 나. 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다. 예산관련사항 : 없음.

고령군 조례 제 호

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【별표 1】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고령군재무과	
연 락 처	(054) 950-6124

【별표 1】

제증명수수료요일표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			개정안			
구분	기준	요액	비고	구분	기준	요액(원)	비고
[인·허가]				[인·허가]			
1~ 2.	(생략)	(생략)		1~2.	(현행과같음)	(현행과같음)	
3. 농수산물관계 가~하.	(생략)	(생략)		3. 농수산물관계 가~하.	(현행과같음)	(현행과같음)	
				거. 비료생산업 등록	신규	20,000	
				너. 비료수입업 신고	신규	20,000	

【별표 1】

제 증명 수수료 요율표

구	분	기 준	요 액(원)	비 고
[증 명]				
1.	신상에 관한 증명			
가.	부양사실 증명	1통	300	
2.	영업, 직업에 관한 증명			
가.	영업주	1통	500	
나.	중소기업자	"	500	
다.	광업·공업·상업	"	500	
라.	농가·비농가	"	200	
3.	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			
가.	납세필 및 등록필	1통	300	
나.	생산실적	"	300	
다.	수출실적	"	300	
라.	납품실적	"	300	
마.	건물사용	"	300	
바.	공장 원료수입	"	300	
사.	분배농지 상환완료	"	300	
아.	보세물건에 관한 감찰(재교부)	"	300	
자.	공장등록 증명 수수료	"	1,000	
차.	실수요자 증명	"	300	
카.	원자재(시설재, 공업요소) 소요량 증명			
(1)	가소요량	"	3,000	
(2)	확정소요량	"	1,000	
타.	시설보유증명	"	300	
파.	(식품환경) 영업허가 및 (휴, 폐업) 사실 증명	"	300	
하.	의료기관, 약품(휴, 폐업)사실증명	"	500	
4.	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			
가.	미분배농지	1통	300	
나.	공부의 등·초본 교부			
(1)	대장문서	"	500	
(2)	토지도면	"	700	
(3)	건물도면	"	500	
다.	지적공부 열람			
(1)	대장	1필지	300	
(2)	도면	"	400	
라.	인·허가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	1 건	100	
마.	개별공시지가 확인	필지당	800	
바.	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(개인)	1 건	20,000	

사.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(법인)	"	30,000
아. 부동산중개법인 분사무소설치신고	"	10,000
자.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	"	3,000
차.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	"	800
5.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		
가. 도로구축의 경계선, 계획선, 건축선 측량	1필지	5,000
나. 환지(예정지 지정)증명	"	400
다. 토지이용계획 확인서	"	1,000
단. 칼라발급 또는 도면 첨부외의 경우	"	1,500
라. 환지 예정지 분할	"	300
마.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분할	"	300
바. 환지예정지 변경신청	"	300
사. 체비지 분할 신청	"	300
아. 토지대금 완납증명	1 건	300
6. 지방세에 관한 증명		
가. 세목별 납세증명	1 통	800
나.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(비)과세증명	"	800
다. 세목별 과세증명	"	800
라. 징수유예증명	"	800
마. 개별주택가격 확인서	주택당	800
바. 공동주택가격 확인서	"	800
7. 회계에 관한 증명		
가. 거래액(물품공급실적)증명	1 통	300
나. 하자보증금 납부(예치)증명	"	300
다. 원천징수 공제증명	"	300
라.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	"	300
마.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	"	300
바. 보상금 지불증명	"	300
사. 면세용도 물품증명	"	300
8. 주택에 관한 증명		
가. 철거사실 증명	"	300
나. 공(시)영주택 분양금납부 증명	"	300
다.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(청구)	1 건	600
9. 기타 제증명		
가. 기타 시설경비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	1 통	300
나. 민사소송법 제254의11제3항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 명부의 열람, 등사	건당	300
[인·허가]		
1. 일반행정 관계		
가. 공유재산의 대부(신규)신청	1 건	5,000
나. 공유재산의 대부(갱신 또는 기간연장) 신청	"	3,000

나. 토지등급 설정심사청구 신청	"	500	
다.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	1 매	50	
라. 기타 각종 인·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	1 건	500	
2. 산림관계			
가.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	"	500	
나. 제재시설허가 및 장소이전 허가 신청	"	500	
다. 개간허가증 교부	"	500	
3. 농수산 관계			
가.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	1 매	200	
나.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	1 건	500	
다. 수산제조업의 변경 허가 신청	"	500	
라. 내수면어업면허신청	1 건	1,000	
마. 내수면어업허가신청	"	1,000	
바. 내수면어업신고	"	1,000	
사. 내수면어업면허연장허가신청	"	1,000	
아. 유해어업의 변경신청	"	1,000	
자.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	"	1,000	
차. 어업신고사항변경신청	"	1,000	
카. 어업면허사항변경신청	"	1,000	
타.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·초본 발급	"	800	
파.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 사용승인 신청	"	1,000	
하. 어업허가증(어업신고증명서)의 재발급	"	1,000	
거. 비료생산업 등록	"	20,000	
너. 비료수입업 신고	"	20,000	
4.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			
가.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	"	1,000	
나. 공업단지 지정 승인	"	1,000	
다. 전기보안 담당자 대행승인	"	1,000	
라.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	"	1,000	
마.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의 재발급	"	4,000	
바.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	"	5,000	
사. 전력시설물의 설계업(감리업) 등록증의 재교부	"	5,000	
5. 건설관계			
가. 사도개설 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 신청	"	500	
나. 공작물 등 설치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	"	허가시의 공사비의 1/1,000	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
다. 토석사리 등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	"	점용료의 1/1,000	
라. 기타공유수면의 점용(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)허가	"	"	
마. 하천(공유수면)점용(물량증가명의)변경 허가	"	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/1,000	
바.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			
(1)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명이하의 배	척당	500	

(2)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명이상 10명 이하의 배	"	900
(3)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명이상 20명 이하의 배	"	1,300
(4)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명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	척당	2,100
사. 통행료(도선료)의 징수허가 신청	1 건	1,000
아. 공영주택의 양도, 양수등 승인신청	"	500
자. 공(시)영주택(증·개축)승인신청	"	500
차.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	"	1,000
카.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	1 건	500
타. 토지사용(체비지)승낙서	"	500
파. 체비지확인서(대부,매수,주소변경,소유권변경)	"	500
하.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	"	500
거. 권리변경(재개발지구) 행위 허가 신청	"	500
너. 화재증명원의 발급	"	800
6. 보건, 사회관계		
가.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	"	20,000
나. 의료기관 개설신고	"	40,000
다. 의료기관 개설허가	"	100,000
라.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	"	40,000
마.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	"	800
바. 치과기공소 인정신청	"	20,000
사. 치과기공소 양도·양수신고	"	20,000
아.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	"	20,000
자. 안경업소양도·양수신청	"	10,000
차.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	"	30,000
카. 부속의료기관개설 변경신고	"	20,000
타. 유료직업 소개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	"	1,000
파. 의례식장등 명칭변경 신고	"	500
하. 의례식장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 신고	"	300
거. 유기장업신규영업허가 (영업자지위승계신고포함)		
(1) 컴퓨터게임장업	"	35,000
(2) 종합유원시설업	"	60,000
(3) 기타유기장업	"	30,000
너. 유기장업변경허가		
(1) 컴퓨터게임장업	"	15,000
(2) 종합유원시설업	"	35,000

(3) 기타유기장업	"	15,000
더. 수처리제조업신규영업신고 (영업자지위승계신고포함)	"	15,000
러. 수처리제조업변경신고	"	5,000
머. 기타위생용품제조업신규영업신고 (영업자지위승계신고포함)	"	4,000
버. 기타위생용품제조업변경신고	"	2,000
서. 장난감제조업신규영업신고 (영업자지위승계신고포함)	"	4,000
어. 장난감제조업변경신고	1 건	2,000
저. 이·미용사신규면허신청	"	4,000
처. 이·미용사면허증재교부	"	2,500
7. 문화공보관계		
가. 공연장 설치허가		
(1) 공연장	"	10,000
(2) 가설 공연장	"	3,000
(3) 임시 공연장	"	500
나. 공연장 증축허가		
(1) 공연장	"	5,000
(2) 가설 공연장	"	1,500
(3) 임시 공연장	"	150
다.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 신청	"	300
라. 사회단체지부 등록 신청	"	6,000
마. 사회단체지부 등록 변경 신청	"	2,000
바. 문화재 매매업 허가 신청	"	500
사. 출판사, 인쇄소 등록 신청	"	500
아. 출판사,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	"	300
자.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유통관련업소		
(1) 유통관련업 등록(신고)	"	20,000
(2)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등록(신고)	"	5,000
8. 옥외 광고물 관계		
가.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업무 위탁 지정신청	"	1,000
나.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	"	500
다.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지정 신청	"	1,000
9. 체육 관계		
가. 체육시설업 신고	"	30,000
나. 체육시설업 변경신고	"	10,000
10. 기타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·허가신청, 신고, 등록지정, 확인 등으로 타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 사무처리 규정에 정하는 것(법령상 의무사항 제외)	1 통	300